

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[] 지정
[] 재지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60일		
신청인	기관·단체명				설립형태			
	주소				홈페이지			
	대표자		성명		전화번호			
	담당자	성명				전화	유선	
							무선	
	직위				전자우편			

양성대상	[] 유아 인성교육 전문인력	[] 초등 인성교육 전문인력	[] 중등 인성교육 전문인력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교육과정 내용	교육과정명	제공기관	교육내용	교육장소	교육방법 및 시간			강사
					계	강의	실습	구성

직접 활용되는 교육시설 현황	시설구분	시설 개수	면적(칸)	비고
	강의실		m ²	
	사무실		m ²	
	화장실		칸	
	실습실 등		m ²	
	건물	[] 신축,	[] 개조,	[] 구조변경
	소유관계	[] 직접소유,	[] 임차 등	

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(또는 교육감)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.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.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.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. 시설·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·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설명서 6.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교육부 또는 교육감)	→	검토 처리기관 (교육부 또는 교육감)	→	결재 처리기관 (교육부 또는 교육감)	→	지정서 통보 처리기관 (교육부 또는 교육감)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